



의료보험GUIDE (I)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아말감 및 복합레진 충전 즉치(차-6) 시에 마취료(바-8, 바-9)를 산정할수 있는지요.
- ☐: 즉치시에 마취료(침윤마취 270원, 전달마취 1,120원) 및 리도카인 재료대(약가기준 책자에 의함, 1앰플 138원)를 산정할수 있습니다.
- ☐: 6세미만 소아의 진료시에 별도 가산을 적용하는 항목과 가산율을 알려주십시오.
- ☐: 출생일로부터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율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1982. 8. 8일 출생 소아는 1988. 8. 8일까지만 적용됨)
-마취료(침윤마취, 전달마취) 30% 가산 (70세이상 노인도 마취료 수가에 30% 가산 산정할수 있음)
-즉일충전즉치(차-6) 20%가산
-치수절단 (차-9) 20%가산
-충 전 (차-13) 20%가산
-X-Ray 촬영료(판독료는 가산 안됨) 및 방사선 치료시 20%가산 (방사선 촬영료(표준 580원)에 대하여서만 가산하며 필름재료대는 가산 안됩니다)
- ☐: 와동형성료(차-13-1)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 다음의 항목 산정시 1치아에 한번만 500원 산정할수 있으며, 즉치료(차-6)산정시에는 와동형성료 산정은 할수 없습니다.
보통즉치(차-1), 치수복조(차-2), 충

전(차-13) (치수절단후의 충전, 발수근치 근충후의 충전, 생즉충 실즉충후의 충전) 시에 와동형성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산정할수 있습니다.

- ☐: 동시에 2가지 시술을 할 경우의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 2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할 경우(예: 발치, 치조골정형수술) 2 가지 중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를 산정할수 있습니다.

※ 일반 참고사항

1. 1988. 7. 1 일자로 의료보험 진료약재료 협약가만이 변경되어 이를 전 회원에게 홍보한바 있으나, 의료보험진료수가인 충전료(차-13)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아말감등 재료대만이 변경되었는데도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충전료에 재료대를 합산하여 잘못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건은 진료비청구서 접수창구에서 반송하고 있으므로 특히 참고하시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 별표 2. 약가기준액표가 1988. 9. 1 일 진료분부터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수록한 약가기준 소책자를 전국 개원회원에게 해당지부를 통하여 배부하였오니 특히 사용하시는 약재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医療保險에 관한 一切의 問議를 書面으로 해 주시면 다음회에 그 解答을 드리겠습니다.